

고 유 번 호 증

(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:본점)

고유번호 : 314-82-93331

단 체 명 : 동탄9동 체육진흥회

대 표 자 성 명 : 주홍수

생 년 월 일 : 1954 년 06 월 19 일

소 재 지 :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9길 76(신동,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)

발 급 사 유 : 신규



(유의사항)

- (1)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며, 「민법」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(2)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(「법인세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)를 제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, 미이행시 가산세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3 년 09 월 06 일

동 화 성 세 무 서 장



세금신고·납부

일반과세자

신고구분	신고납부기간	신고대상기간	비고
부가가치세	1.1.~1.25.	직전연도 7.1.~12.31.	4월, 10월은 신고 없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 납부
	7.1.~7.25.	1.1.~6.30.	
종합소득세	5.1.~5.31. (성실신고확인대상자 5.1.~6.30.)	직전연도 1.1.~12.31.	11월은 신고 없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납부

간이과세자

신고구분	신고납부기간	신고대상기간	비고
부가가치세	1.1.~1.25.	직전연도 1.1.~12.31.	7월은 신고 없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 납부
	7.1.~7.25.	1.1.~6.30.	신고대상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신고해야 함
종합소득세	5.1.~5.31.	직전연도 1.1.~12.31.	11월은 신고 없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납부

면세사업자

신고구분	신고납부기간	신고대상기간	비고
사업장현황신고	1.1.~2.10.	직전연도 1.1.~12.31.	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(법인사업자 제외)
종합소득세	5.1.~5.31.	직전연도 1.1.~12.31.	11월은 신고 없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납부

법인사업자

부가가치세는 연4회 신고, 납부(1월, 7월 확정신고·납부, 4월 10월 예정신고·납부)하고,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▶ 「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> 성실신고지원」이나 「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」 참조

휴·폐업 신고

- ▶ 휴·폐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▶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▶ 허가·신고·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

- ▶ (국세증명) 인터넷(홈택스, 정부24)과 모바일홈택스, 무인민원발급기,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이용
- ▶ (국세상담)

① 개별납세자의 세무관련 사항 : 관할세무서 담당자

②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령 관련 사항

- 전화 : 국번없이 (☎ 126) 월~금 오전 9시~오후 6시(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)

1							2	3	4
(1)	(2)	(3)	(4)	(5)	(6)	(7)			
현금 영수증	전자 세금계산서	신고납부	학자금 상환	연말정산 간소화	사업자등록 신청및변경	증명발급	세법상담	각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	탈세 등 각종제보

- 인터넷 : 「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상담/제보 > 「인터넷 상담하기」에서 사용자 인증 후 상담

- ▶ (사회보험)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은 담당기관 중 한 곳에서 통합신고 가능 하며, 인터넷(www.4insure.or.kr)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국민건강보험	국민연금	고용보험	산재보험
상담전화	1577-1000	국번없이 1355	1350	1588-0075

- ▶ (유의사항)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행위는 불법 행위로 무겁게 처벌되고,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 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- ▶ (기타) 세무서에서 배부하는 「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」책자나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및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